

## 1. 의결주문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우선 관계 서류나 장부·제품 등의 제출 요청 등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허청장 등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한 제품 등의 현황과 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·검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8. 5. 17. ~ 6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의3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) ① 특허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·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(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)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(이하 “부정경쟁행위등”이라 한다)를 확인할 수 있다.

1.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서류나 장부·제품 등의 제출 요청
2.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, 자문 및 진술 청구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·검사의 목적,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·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·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, 조사·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.

1.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

2.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·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
3.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

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4(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) ①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·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.

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2조제1항 중 “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정권고의 이유
2. 시정권고의 내용
3. 시정기한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위 수거제품을 검사한 결과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제품이 아닌 경우”를 “위 수거제품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경우”로 한다.  
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“신분증”을 “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뒤쪽)

소 속:

성 명:
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 
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 
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·검  
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 
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 
증명함.

년 월 일

특허청장 직인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거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) 제1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출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증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증표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<u>제1조의3(수거물품의 처리 등) ①</u>  <u>특허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  <u>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</u>  <u>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</u>  <u>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</u>  <u>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</u>  <u>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</u>  <u>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</u>  <u>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</u>  <u>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</u> 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</u>  <u>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</u>  <u>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법 제2</u>  <u>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</u>  <u>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, 제3</u>  <u>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</u>  <u>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</u>  <u>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</u>  <u>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</u>  <u>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</u></p>	<p><u>제1조의3(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</u>  <u>방법 등) ① 특허청장, 특별시장</u>  <u>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</u>  <u>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</u>  <u>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</u>  <u>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</u>  <u>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</u>  <u>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</u>  <u>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</u>  <u>서류나 장부·제품 등을 조사하</u>  <u>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</u>  <u>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</u>  <u>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</u>  <u>제2조제1호(아목과 카목은 제외</u>  <u>한다)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,</u>  <u>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</u>  <u>반한 행위(이하 “부정경쟁행위</u>  <u>등”이라 한다)를 확인할 수 있</u>  <u>다.</u></p> <p><u>1.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참</u>  <u>고인에 대한 관계 서류나 장</u>  <u>부·제품 등의 제출 요청</u></p> <p><u>2. 당사자, 이해관계인 또는 참</u>  <u>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, 자문</u></p>			

및 진술 청취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·검사의 목적,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·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·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, 조사·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.

1.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
2.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·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



<신 설>

능한 경우

3.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

제1조의4(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)

①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·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

<p>제2조(시정권고의 방법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<u>권고 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u>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</u></p> <p>제2조(시정권고의 방법 등) ① 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시정권고의 이유</u></li> <li>2. <u>시정권고의 내용</u></li> <li>3. <u>시정기한</u></li> </ol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